



Korean Tax Newsletter

2025년 12월

CONTENTS

세무동향

- 재정경제부 출범, 한국경제 대도약 선도
- 국세청,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보고
- 행정안전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예규판례

○ 법원

-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와 이월공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 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 조세심판원

- 관리형 신탁 구조에서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지 않은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의 「지방세특례한법」 제 58 조의 2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 리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한 차입금으로 기존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부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 임직원이 근로하는 회사의 보험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항 제 6 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인 고압변전설비, 비상발전기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행의 고객이 타행 CD 기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중 타행에 배부되는 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비적격분할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
-

세무동향

재정경제부 출범, 한국경제 대도약 선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습니다.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으로, 재정경제부는 ‘26.1.2.(금)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L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업무<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 (기획예산처)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방향<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시경제·민생 안정적 관리, 경제정책 합리적 조정,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제 운영, 전략적 금융·대외협력 강화, 적극적 국고관리,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한국경제 대도약 선도	

국세청,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보고

국세청은 '25.12.11.(목)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5.12.1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국세청 보도자료(Link)
<p>○ 주요 정책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치던 낡은 세무조사 관행 혁신- 신고내용확인 선정 제외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부담 완화로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p>○ 중점 추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선도- 세무조사 통지 후 3 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시기를 선택하는 '시기선택제' 도입-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는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 도입- 신산업(AI·바이오 등)과 수출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제·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주요 교역국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여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미래전략 산업의 APA를 우선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	

행정안전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Link\)](#)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5.12.30.(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 신설 등](#)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상향\(0.1%p\) 조정 등](#)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판례

[법원]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와 이월공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 두 53921 판결, (일부)파기환송)

■ 쟁점

-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 2782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81 조 제 3 항 제 2 호 각 목의 규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감면 또는 공제의 적용 방법 및 공제의 한도 등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각 목의 규정이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추가로 설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 2784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 제 23 조 제 13 항 제 3 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항')에서 '승계시킨 또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 및 이를 토대로 도출된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의 각 '상시근로자 수'를 전제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 1439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제 144 조 제 3 항이 정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안

원고는 2015년 설립되어 2016년 이 사건 피합병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뒤, 2016·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피합병법인의 구 조특법 제 26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고용창출투자 추가공제금액을 합병으로 승계받은 이월공제대상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의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 1522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45 조 제 4 항은 같은 법 제 44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1 조 제 3 항은, 합병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 44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각 목별로 공제액의 계산방법 및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 및 한계에 대해 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1 조 제 3 항 제 2 호 각 목에 관련된 수권규정의 성격과 내용, 수권의 범위와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목의 규정은 구 법인세법 제 44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감면 또는 공제의 적용 방법 및 공제의 한도 등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이와 달리 위 각 목의 규정이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추가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나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0 조의 4 제 2 항에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이 다른 법률에 별도로 마련될 수 있음이 명시되고 있으므로, 위 각 목 규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법인세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공제 등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도 아님 (...)

2. 구 조특법 시행령 제 23조 제 13항 제 3호 가목은 합병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관하여, 승계시킨 기업(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승계한 기업(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조항에서의 ‘승계시킨 또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두 가지 모두 합병등기일이라는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실제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구 조특법 시행령 제 23조 제 11항 제 1호의 계산식 가운데 나타난 바와 같이, 위 각 과세연도 동안 피합병법인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이 타당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위 계산식을 적용하여 도출된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의 각 ‘상시근로자 수’를 전제로 하여 구 조특법 제 144 조 제 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이 사건 조항은, 합병 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을 통합된 하나의 단위로 보아, 합병 전 법인들의 상시근로자 수와 합병 후 하나가 된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합병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에도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도록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취급하여야 함

이 사건 조항은,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종전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경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식을 규정하면서, 각각의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또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빼거나 더한 수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음.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이 마치 합병 이전부터 하나의 법인이었던 것처럼 해당 사업부문 전체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기서의 ‘승계’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에 걸친 해당 사업부문의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법원] 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 두 34152 판결, 상고기각)

■ 쟁점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의 자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해 추징되고 피해법인에 환부된 것이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안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들의 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원고가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횡령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의 납부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이루어진 후 그러한 추징 및 환부가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 191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5 조의 2 제 2 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 1 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 5 호에서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5 조의 2는 “법 제 45 조의 2 제 2 항 제 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 2 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 4 호에서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부패재산몰수법」 제 6 조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제 1 항),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 2 항).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몰수·추징 제도는 검사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임.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임(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 도 8662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 도 17596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2 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5 조의 2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2 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 두 35346 판결 참조)

나아가 앞서 본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의 요건과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몰수·추징되고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법원]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 두 34494 판결, 상고기각)

■ 쟁점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적정 이자 상당액)」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그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안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증세법 제 45 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제 41 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근거로 적정 이자 상당액이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이자 상당액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에 관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안임

판결요지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 1684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 조의 5 제 1 항 및 제 2 항 제 1 호는,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인 법인 등)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사이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 1993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 조의 5 제 1 항 제 1 호 역시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사이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 3039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 조의 4 제 4 항 제 1 호 나목 및 제 7 항은 「특정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 41 조의 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 41 조의 4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며(제 1 항 제 1 호), 이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 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에는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 2 항)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34 조의 4 제 4 항 제 1 호 나목 및 제 7 항의 규정은 이후 개정에 의하여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음(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 34 조의 5 제 4 항 제 1 호 나목 및 제 7 항)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 주주가 그러한 거래로 인한 특정법인의 이익을 분여받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세부담 없이 변칙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음.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함.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

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상증세법 제 41 조의 4 제 2 항은 금전 무상대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출에 있어 대출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이익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증여 의제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님

[조세심판원] 관리형 신탁 구조에서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지 않은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2 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조심 2023 지 0485, 2025.9.15., 기각)

■ 쟁점

(합동)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 조의 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19.6.14. 경기도 시흥시 OOO 외 1 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 11 조 제 1 항 제 7 호 나목의 세율(1 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수탁법인”)와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 건 수탁법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이 건 수탁법인은 쟁점토지를 신탁 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 9 조 제 3 항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음

이 건 수탁법인은 쟁점토지상에 BBB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변경승인을 받고,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지하 2 층 지상 10 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43,950 m²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위의 건축물 중 40,608.7 m²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 17771 호로 개정된 것) 제 58 조의 2(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제 1 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100 분의 35 를 감면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 원을 신고·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2019.6.14.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 16041 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58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2 제 1 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 조의 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 월 31 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1 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 조의 5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35 를 경감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 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는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각각의 감면 조항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 두 46212 판결, 같은 뜻임),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2 제 1 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 조의 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

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수탁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 조의 2에 따라 정당하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았고,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취득하는 건축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므로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이 건 수탁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리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한 차입금으로 기존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조심 2025 서 3129, 2025.12.1., 취소)

■ 쟁점

리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한 차입금으로 기존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의 사업주체임.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A로부터 공급가액 OOO 원의 세금계산서를, 금융자문수수료 등 자금조달자문계약(이하 “쟁점금융자문용역”)을 체결한 B 주식회사·C 주식회사·D 주식회사·E 회계법인·F 주식회사·G 주식회사·법무법인 H 주식회사·I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 원(이하 “쟁점금융자문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세금계산서들의 매입세액 합계액을 불공제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음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토목설계용역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하고, 쟁점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약 33.51%로 안분한 OOO 원을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나머지 OOO 원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융자문용역을 통해 조달한 대출금이 토지 취득과 관련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금융자문수수료 매입세액 OOO 원 중 OOO 원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하고 나머지 매입세액 OOO 원만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OOO 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하였고(나머지 부가가치세 OOO 원은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금융자문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대출금 차입을 위해 지급된 수수료로서 대출금 대부분이 토지 취득과 관련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이외에도 대출금 중 일부가 토지 취득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금융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의견이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6.2.18. 선고 2012 두 22447 판결, 같은 뜻임)이고, 토지의 경우 영구성을 갖는 특성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하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그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는 것(헌법재판소 2010.6.24. 선고 2007 헌바 12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인바,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만기 도래한 기존 대출금을 연장 또는 증액하기 위하여 발생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고, 동 비용이 토지의 취득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거나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쟁점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부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5 서 1531, 2025.12.1., 경정)

■ 쟁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피합병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됨에 따라 합병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전부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21.6.4. A 법인(이하 “피합병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21.12.1.을 합병기일로 하여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하였으며, 쟁점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근로자는 모두 청구법인에 승계되었음. 피합병법인은 합병되기 전인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 1600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제 29 조의 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총 OOO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피합병법인은 2021.12.1.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2021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부 감소한 것으로 보아, 2022.2.28.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8~2019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ooo 원)을 전액 추가 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합병 시 고용이 승계되어 쟁점피합병법인 소속 상시근로자 수의 실질적인 감소가 없으므로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4.6.10. 처분청에 2021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조특법 제 29 조의 7 제 2 항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6 조의 7 제 7 항 및 제 9 항은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 23 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 13 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 23 조 제 13 항 제 3 호는 “합병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구 조특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 2436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3 조 제 10 항 제 3 호 가목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만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나, 2013.2.15. 대통령령 제 24368 호 개정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2014.2.21. 대통령령 제 25211 호 개정을 통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후 조문 순서를 변경하여 현행 조항에 이르게 되었음. 2013년 및 2014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관련 조항의 개정취지를 ‘합병 등을 통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에 증감이 없음을 명확화’하거나 ‘합병 등 구조개편 시

근로자 수가 변화하지 않도록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서울고등법원 2022.7.6. 선고 2021 누 49927 판결,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이 건 관련 법령 등의 입법연혁,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관련 조항은 합병 등과 같은 구조개편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의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되지 않고 일치되도록 그 계산 방식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해 세액공제 적용 국면에서는 실제로 한 고용이 증대된 부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사후관리 국면에서는 실제로 고용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 임직원이 근로하는 회사의 보험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 항 제 6 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40, 2025.12.9.)

■ 질의

임직원이 근로하는 회사의 보험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 항 제 6 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임직원이 근로 중인 회사의 판매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을 때 공통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 항 제 6 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 12 조 제 3 호 처목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5-법인-1163, 2025.10.17.)

■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자가 제조하여 취득한 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정밀 공작 기계장치 등을 자체 제작하여 판매하는 기계장치 제조업체임
- 질의법인은 정밀 기계장치 제작 기술과 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어 필요한 기계장치를 외부에서 매입하지 않고 직접 제작하는 것이 가능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한 경우 동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국세청]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인 고압변전설비, 비상발전기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법인-1158, 2025.11.4.)

■ 질의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인 고압변전설비, 비상발전기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1년 데이터센터 코로케이션 서비스^{(*)1}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2}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임
(*)1 기업이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지 않고 전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센터 공간에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 IT 자산을 설치·운영하는 서비스
(*)2 인터넷을 통해 서버, 저장공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데이터센터를 건설함에 있어 고압변전설비, 비상발전기, 냉각시스템 등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자체의 효용 및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전기·냉난방설비 등은 건물 부속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전기·냉각·소방설비 등이 데이터센터의 운영에 직접적·필수적인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 따른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질의법인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당행의 고객이 타행 CD 기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중 타행에 배부되는 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2721, 2025.11.24.)

■ 질의

질의법인 고객이 타행 CD 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쟁점수수료 중 CD 이용수수료 외 타행에 귀속되는 공동망수수료가 질의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을 포함한 국내 은행들은 당행 고객이 타행에서 현금자동인출기(이하 ‘CD 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이용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타행 CD 기를 이용하는 경우 현금인출 등의 거래는, 여러 은행의 시스템과 금융결제원에 설치된 중계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은행들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하 ‘CD 공동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은행들은 ‘CD 공동이용업무 규약’ 및 ‘CD 공동이용업무 시행세칙’을 통해 공동업무 처리방법 및 취급대행비용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
- 쟁점수수료는 ‘CD 이용수수료’와 ‘공동망수수료’로 구성되는데, 질의법인은 회계처리 시 CD 이용수수료는 질의법인의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고, 공동망수수료는 타행에 지급될 수수료로, 미지급내국환채무(부채계정)로 계상한 후 익일 금융결제원이 각 은행별 거래를 집계·정산한 CD 거래결제지시서에 따라 은행 간 차액결제 처리하고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당행”)이 다른 은행업 영위 법인(이하 “타행”)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거래한 당행의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중 일부를 타행에 배분더라도, 타행에 배분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 제 5 조 제 3 항의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비적격분할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

(서면-2024-법규법인-2856, 2025.12.10.)

■ 질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초 적용 후 비적격분할시 그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2 차 연도부터의 통합고용세액 공제 적용 방법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2.1.7.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3.2.19.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다음과 같은 상시근로자 현황으로서 2023년 사업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 공제 적용함

<질의법인 상시근로자 현황>

구분	2023	2024	증감
본점	8	15	7
지점	7	11	4
합계	15	26	11

- 질의법인은 본점과 지점을 인적분할 예정이며,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분할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 46 조 제 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음. 또한 분할 이후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6 조의 8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분할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8 제 1 항 각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받던 금액을 같은 법 제 29 조의 8 제 1 항 본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음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